페이지	변경 전	변경 후
목차	**제5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**	**제5부 광물성 생산품**
57	★ [하단 표 제1902호]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(플레이크 모양·낟알 모양·진주 모양·무거리 모양·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)	파스타(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·마카로니·누들·라자니아·뇨키·라비올리·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)와 쿠스쿠스(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
71	[구성표] **제5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**	**제5부 광물성 생산품**
88	[주 제6호] **마. 원자로에서 사용**[조사된 연료 요소(카트리지)]	**마. 원자로에서 사용**(조사)**된 연료 요소**(카트리지)
119	[소호주 하단] **소호주 제1호**	**소호주 제3호**
169	[구성표] **6301 ~ 6310 (10/2절)**	**6301 ~ 6310 (10/3절)**
210	★ **제6216호 누락**	**제6216호 장갑류**
213	★ **제3절 누락**	[6308호 다음] **제3절 사용하던 의류·방직용 섬유제품, 넝마**
341	★ **제9607호 누락**	**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**
349	**제5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**	**제5부 광물성 생산품**
351	**6301 ~ 6310 (10/2절)**	**6301 ~ 6310 (10/3절)**
358	**제15부 주 제6호 누락**	**제15부 주 제6호** **이 표의 비(卑)금속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,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(卑)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.**
361 362	[구성표 / 주 규정 제목] **제92류 국내주 제1호** **제92류 국내주 제2호**	**제91류 국내주 제1호** **제91류 국내주 제1호**
120	[제3809호] **드레싱·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**(섬유산업·제지산업·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**드레싱·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**(섬유산업·제지산업·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
189	[주 제4호 - 표현 변경] **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,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·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**(통상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)**은 포함하지 않는다**(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).	**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,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·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**(통상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)**은 포함하지 않는다**(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).
318	[주 제6호 - 표현 변경] **나. 질병,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**	**나. 질병,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 하는 기기**
336	[주 제2호 - 표현 변경] **이 류에는 천연진주·양식진주·귀석·반귀석**(천연의 것, 합성·재생한 것)**·귀금속·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.**	**이 류에는 천연진주 · 양식진주 · 귀석 · 반귀석**(천연의 것, 합성 · 재생한 것) **· 귀금속 ·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미소한 부분에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.**

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

주 제1호

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.

가. 소시지·육·설육·피·곤충·어류나 갑각류·연체동물·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(제16류)

나. 제0403호·제1901호·제1902호·제1904호·제1905호·제2105호·제2202호·제2208호·제3003호·제3004호의 조제품

제0403호	요구르트, 버터밀크·응고밀크와 응고크림·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(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·과실·견과류·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
제1901호	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·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(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(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
제1902호	파스타(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·마카로니·누들·라자니아·뇨키·라비올리·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)와 쿠스쿠스(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
제1904호	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(예: 콘 플레이크)과 낱알 모양·플레이크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(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 [제19류 주 제3호]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(제1806호).
제1905호	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(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), 성찬용 웨이퍼·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·실링웨이퍼·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
제2105호	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(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)
제2202호	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(제2009호의 과실·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)
제2208호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), 증류주·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
제3003호	의약품(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·제3005호·제3006호의 물품,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,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)
제3004호	의약품[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)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제3002호·제3005호·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]

해설서 분류체계

이 류에서는 제50류부터 제56류, 제58류와 제59류의 직물(워딩은 제외하며 펠트나 부직포는 포함한다)로 만든 남성용, 여성용이나 어린이용 의류, 의류부속품과 의류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. 제621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·의류부속품·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.

호	품 명	세율(%)
6201	**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·카코트·케이프·클록·아노락**(스키재킷을 포함한다)·윈드치터·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(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)	
6202	**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·카코트·케이프·클록·아노락**(스키재킷을 포함한다)·윈드치터·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(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)	
6203	**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·앙상블·재킷·블레이저·긴 바지·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·짧은 바지·반바지**(수영복은 제외한다)	
6204	**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·앙상블·재킷·블레이저·드레스·스커트·치마바지·긴 바지·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·짧은 바지·반바지**(수영복은 제외한다)	
6205	**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**	
6206	**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·셔츠·셔츠블라우스**	
6207	**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·언더팬츠·브리프·나이트셔츠·파자마·목욕용 가운·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**	
6208	**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·슬립·페티코트·브리프·팬티·나이트드레스·파자마·네그리제·목욕용 가운·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**	
6209	**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**	
6210	**의류**(제5602호·제5603호·제5903호·제5906호·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)	
6211	**트랙슈트·스키슈트·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**	
6212	**브래지어·거들·코르셋·브레이스·서스펜더·가터와 이와 유사한 제품, 이들의 부분품**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)	
6213	**손수건**	
6214	**숄·스카프·머플러·만틸라·베일과 이와 유사한 물품**	
6215	**넥타이류**	
6216	**장갑류**	
6217	**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, 의류·의류부속품의 부분품**(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	

해설서 분류체계

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

① 제6301호부터 제6307호(제1절)에는 직물·편물·펠트·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(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)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. "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"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(제11부 총설 Ⅱ 참조).

② 제6308호(제2절)에는 직물과 실로 구성한 특정의 세트를 분류한다(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러그용·태피스트리용·자수한 테이블보용·서비에트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).

③ 제6309호나 제6310호(제3절)에는 해당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과 넝마(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의 것)·스크랩끈 등을 분류한다.

호	품 명	세율(%)
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		
6301	**모포류와 여행용 러그**	
6302	**베드린넨·테이블린넨·토일렛린넨·주방린넨**	
6303	**커튼**(드레이프를 포함한다)·**실내용 블라인드,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**	
6304	**그 밖의 실내용품**(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	
6305	**포장용 빈 포대**	
6306	**방수포·천막·차양, 텐트**(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), **돛**(보트용·세일보드용·랜드크래프트용), **캠프용품**	
6307	**그 밖의 제품**(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)	
제2절 세트		
6308	· **러그용·태피스트리용·자수한 테이블보용·서비에트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**(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), · **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**	
제3절 사용하던 의류·방직용 섬유제품, 넝마		
6309	**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**	
6310	· **넝마**(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), · **끈·배의 밧줄·로프·케이블의 스크랩,** · **끈·배의 밧줄·로프·케이블 제품의 폐품**(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)	

호	품 명	세율(%)
9601	**가공한 아이보리·뼈·귀갑·뿔·가지진 뿔·산호·자개·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**(성형품을 포함한다)	
9602	**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, 성형품이나 조각품**(왁스·스테아린·천연수지·모델링페이스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)**,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, 가공한 비경화 젤라틴**(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)**과 비경화 젤라틴의 제품**	
9603	· **비·브러시**(기계·기구·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)·**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**(수동식으로 한정한다)·**모프·깃 먼지털이,** · **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,** · **페인트용 패드·롤러·스퀴지**(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)	
9604	**수동식 체와 어레미**	
9605	**개인용 여행세트**(화장용·바느질용·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)	
9606	· **단추·프레스파스너·스냅파스너·프레스스터드·단의몰드와 이들의 부분품,** · **단추 블랭크**	
9607	**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**	
9608	· **볼펜,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, 만년필·철필형 만년필과 그 밖의 펜, 복사용 철필, 프로펠링펜슬이나 슬라이딩펜슬,** · **펜홀더·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,** · **이들의 부분품**(캡과 클립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)	
9609	**연필**(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)·**크레용·연필심·파스텔·도화용 목탄·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**	
9610	**석판과 보드**(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,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)	
9611	· **날짜 도장·봉합용 스탬프·넘버링스탬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**(레이블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, 수동식으로 한정한다)**,** · **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**	
9612	**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**(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,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**과 잉크패드**(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)	
9613	**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**(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)**와 이들의 부분품**(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)	
9614	· **흡연용 파이프**(파이프 볼을 포함한다)·**시가홀더·시가렛홀더,** · **이들의 부분품**	
9615	**빗·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·머리핀·컬링핀·컬링그립·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**(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**과 이들의 부분품**	
9616	**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,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, 화장용 분첩과 패드**	
9617	**진공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**(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)**와 그 부분품**(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)	
9618	**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,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**	
9619	**위생타월·탐폰, 냅킨**(기저귀)·**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**(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)	
9620	**일각대·양각대·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**	